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연우지앤비(조태준)

나. 전화번호 : ① 031-338-9746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에 전단포켓을 설치하고 내부지점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슬래브와 전단포켓이 설치된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슬래브와 강거더가 비합성인 상태에서 슬래브에 설치된 인장강도 1,860MPa 이상의 강연선으로 긴장한 후,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에 부착된 전단포켓을 이용, 슬래브와 강거더를 결합하여 강합성 거더를 형성한다. 슬래브의 균열방지 및 강거더의 내하력 확충을 위하여 강거더 제작시 유지관리용 정착 구조를 강거더 내부에 설치한다. 부모멘부 슬래브의 강연선 긴장을 통한 슬래브단면의 유효화로 강합성단면의 강성이 증대되어 강재량을 절감하였고, 부모멘트부 슬래브의 인장 균열을 제어하였다. 또한, 경사거더를 적용할 경우 상부슬래브 단면의 자중감소로 인한 작용력 감소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강합성 거더 교량 공법이다

<범위>

1,860MPa 이상의 고강도 강연선으로 부모멘트부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를 비합성 상태에서 긴장하여 부모멘트부 슬래브가 유효단면으로 고려된 후, 전단포켓이 설치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와 슬래브를 합성하여 형성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천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김재국) ② (주)한라(이석민)
③ (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나. 전화번호 : ① 02-2025-8400 ② 02-3434-5114 ③ 02-2049-5114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